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8 - 31호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순 천 시 의 회 의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8. 8. 28. ~ 9. 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w1028@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1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8. 27.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18년 기준인건비 확보 정원 반영
 - (국가정책) 치매안심센터, 아동보호, 납세자보호관 등
 - (지역현안) 일자리, 도시재생, 정원지원, 읍면동 현장인력 등

2. 주요내용

○ (총 정원) 1,389명 → 1,424명 / * 35명 증 (단위 : 명)

구분	현행	개정	증감 내역			비고
			계	증원	감원	
총계	1,389	1,424	35	35	-	
정무직	1	1	-	-	-	
일반직	1,353	1,386	33	33	-	6급이하 33명
별정직	1	1	-	-	-	
연구직	5	7	2	2	-	연구사 2명
지도직	29	29	-	-	-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재정 수반사항

(단위 : 천원, 명)

구 분	인건비	인력 증감	비 고
합 계	1,990,290	증 35	
일반직	1,899,382	증 33	6급이하 33
연구직	90,908	증 2	연구사 2

※ 인건비 산출 기준 (2018년 공무원 1인당 직접 경비)

- 기본급, 수당(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직급보조비, 이전경비(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7. 23. ~ 2018. 8. 2.)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7. 23.(여성가족과-2688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 7. 19.(총무과-15886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7. 23.(전략기획과-782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7. 20.(순천시 공고 제 2018-1200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89명”을 “1,42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64명”을 “1,39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424	1,424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386	1,386				
3급	1	1				
4급	10	4	1	2	3	
5급	72	26	3	5	14	24
6급이하 계	1,303	1,303				
별정직 계	1	1				
6급상당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연구사	7	7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89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64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424명 ----- 1. ----- : 1,399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389	1,389					총 계	1,424	1,424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353	1,353					일반직 계	1,386	1,386				
3급	1	1					3급	1	1				
4급	10	4	1	2	3		4급	10	4	1	2	3	
5급	72	26	3	5	14	24	5급	72	26	3	5	14	24
6급이하 계	1,270	1,270					6급이하 계	1,303	1,303				
별정직 계	1	1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계	1	1					6급상당 이하 계	1	1				
연구직 계	5	5					연구직 계	7	7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5	5					연구사	7	7				
지도직 계	29	29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지도사	27	2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구 : 변동 없음

○ 정원 증감내역

(단위 : 명)

합 계	일반직(6급이하)	연구직(연구사)	비 고
35	33	2	

2. 비용 소요내역

○ 총괄내역

(단위 : 원)

구 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 고
합 계			35명	1,990,290,940	
일반직	6급	81,154,770	평균 57,557,040	33명	1,899,382,320
	7급	64,457,900			
	8급	48,821,520			
	9급	35,753,970			
연구직	연구사	45,454,310	2명	90,908,620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 분	6급 (26호봉)	7급 (16호봉)	8급 (9호봉)	9급 (4호봉)	연구사 (4호봉)	비고
총계 (①+②+③)	81,154,770	64,457,900	48,821,520	35,793,970	45,454,310	
① 인건비(A+B)	62,060,560	48,930,330	36,545,940	26,034,510	32,863,950	
· 기본급(A)	47,304,000	36,777,600	27,182,400	19,825,200	25,471,200	
· 수당(B)	14,756,560	12,152,730	9,363,540	6,209,310	7,392,750	
- 정액급식비	1,560,000	1,560,000	1,560,000	1,560,000	1,560,000	
- 명절휴가비	4,730,400	3,677,760	2,718,240	1,982,520	2,547,120	
- 연가보상비	1,356,040	1,054,290	779,220	568,320	730,170	
- 정근수당	3,942,000	3,064,800	1,636,560	495,630	636,780	
- 정근수당가산금	1,200,000	960,000	960,000	-	-	
- 시간외수당(정액분)	1,368,120	1,235,880	1,109,520	1,002,840	1,318,680	
- 기타수당(대민활동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② 직급보조비	1,860,000	1,680,000	1,500,000	1,500,000	1,860,000	
③ 이전경비	17,234,210	13,847,570	10,775,580	8,259,460	10,730,360	
- 성과상여금	3,525,600	2,997,500	2,490,000	2,117,200	3,262,100	
- 연금부담금	1,150,270	9,106,340	6,958,730	5,162,380	6,247,900	
- 국민건강보험금	2,055,640	1,623,890	1,235,660	912,540	1,136,490	
- 장기요양보험금	151,700	119,840	91,190	67,340	83,870	

3. 협의사항 : 해당 없음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작성자 : 안전행정국 총무과장

서용석(☎ 749-5457)

총무과 인사팀장

신순옥(☎ 749-5632)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281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8. 27.

1. 개정이유

- 탄력 있고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담당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조례 중 담당단위 명칭을 팀으로 일괄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개정현황 : 조례 95건
- 개정내용
 - (기구명칭) “담당” 을 “팀” 으로 개정
 - (대외직명) “담당” 을 “팀장” 으로 개정

3. 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7. 23. ~ 2018. 8. 2.)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7. 23.(여성가족과-2688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7. 23.(전략기획과-782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7. 20.(순천시 공고 제 2018-1201호)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탄력 있고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담당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순천시 조례 중 담당단위 명칭을 팀으로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개정) 순천시 조례 중 담당 등 명칭의 개정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팀제 전환에 따른 조례 개정 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1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	실무담당으로	실무팀장으로	전략기획과
2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업무 담당이	업무팀장이	전략기획과
		제15조 제2항	주무담당이	주무팀장이	전략기획과
3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	업무 담당을	업무팀장을	전략기획과
4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	업무담당으로	업무팀장으로	전략기획과
		제14조 제2항	담당	팀장	
5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예산담당으로	예산팀장으로	전략기획과
		제18조 제5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제22조 제4항	예산담당으로	예산팀장으로	
6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예산담당	예산팀장	전략기획과
7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담당팀장	팀장	전략기획과
8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감사과
9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업무담당주사	업무팀장	총무과
10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6조	후생업무 담당	후생업무 팀장	총무과
11	순천시 포상 조례	제13조 제2항	포상업무담당주사가	포상업무 팀장이	총무과
12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제14조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재난관리업무 팀장	안전총괄과
13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 제2항 제2호	재난재해 업무 담당	재난재해업무 팀장	안전총괄과
		제9조 제6항	재난재해 업무담당으로	재난재해업무 팀장으로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14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13조 제5항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안전총괄과
15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안전총괄과
		제8조 제3항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제21조 제1항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16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안전총괄과
17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민방위담당	민방위팀장	안전총괄과
18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	CCTV 업무 관련 담당이	CCTV 업무 관련 팀장이	안전총괄과
19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담당확인	팀장확인	세무과
		별지 제5호 서식	징수확인(담당)	징수확인(팀장)	
		별지 제6호 서식	징수확인(담당)	징수확인(팀장)	
20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담당	팀장	세무과
		별지 제4호 서식	담당	팀장	
21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담당	팀장	회계과
2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제10항	업무담당 주사로	업무팀장이	회계과
23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제9조	업무담당	업무팀장	홍보전산과
24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담당	팀장	환경보호과
25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별지 제3호의 1서식	담당	팀장	자원순환과
		별지 제3호의 2서식	담당	팀장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26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센터 업무팀장	자원순환과
27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제15조 (기금의 운용 관계 공무원)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팀장이 된다	자원순환과
		제23조(간사 등) 제2항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팀장이 된다	자원순환과
		별지 제3호 서식	담당	팀장	자원순환과
28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노사업무 담당	노사업무 팀장	경제진흥과
29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경제통상과장	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제5조 제1항 제2호	경제통상과 업무담당	경제진흥과 업무팀장	
30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취업지원 업무담당	취업지원 업무팀장	경제진흥과
3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업무담당	업무팀장	경제진흥과
32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8조 제5항	업무담당 주사가	업무팀장이	투자유치과
33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24조 제2항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마을공동체업무 팀장	시민소통과
34	순천시 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행복돌봄과
35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9조 제7항	담당주사	팀장으로	행복돌봄과
36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	제5조 제3항	각 업무담당과	각 업무팀장과	사회복지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37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기금관리자)	자활업무 담당으로	자활업무 팀장으로	사회복지과
38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업무담당주사로	업무팀장으로	사회복지과
39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10조 제5항	사회복지업무 담당	사회복지업무 팀장	사회복지과
40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업무담당이	업무팀장이	노인장애인과
41	순천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업무담당이	업무팀장이	노인장애인과
42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4항	업무담당으로	업무팀장으로	노인장애인과
43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제5항	소관 업무 담당이	소관 업무 팀장이	노인장애인과
44	순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여성가족과
45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 제1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여성가족과
46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11조 제1항	담당으로	팀장으로	여성가족과
47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9조	업무담당주사가	업무팀장이	여성가족과
48	순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담당이	팀장이	토지정보과
		제17조 제3항	(담당)	(팀장)	
		별지 제5호 서식	담당	팀장	
49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9조	도로명주소업무담당	도로명주소업무팀장	토지정보과
50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지적재조사사업업무담당이	지적재조사사업업무팀장이	토지정보과
		제19조 제1항	지적재조사사업업무담당이	지적재조사사업업무팀장이	토지정보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51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이	부동산가격공시업무 팀장이	토지정보과
52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2항	도시계획담당으로	도시계획팀장으로	도시과
53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	서기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업무팀장이	건설과
		별지 서식	담당	팀장	
54	순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가	기반조성업무팀장이	건설과
55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	제5조 제5항	소하천업무 담당	소하천업무 팀장	건설과
56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 제22조	업무담당	업무팀장	건축과
57	순천시 건축 조례	제12조, 제14조	업무담당	업무팀장	건축과
58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팀장	건축과
59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4조 제7항	주택관련 업무담당	주택관련 업무팀장	건축과
60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3항	자전거 업무 담당	자전거 업무 팀장	도로과
61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	교통관리담당	교통관리팀장	교통과
62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8조	대중교통업무 담당	대중교통업무 팀장	교통과
63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의사담당이	의사팀장이	의회사무국
64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7조 제3항	의정담당으로	의정팀장으로	의회사무국
65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9조	업무담당주사로	업무팀장으로	의회사무국
66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	보건업무 담당주사가	소관 업무 주무팀장이	보건위생과
67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담당	식품위생팀장	보건위생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68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관련 업무담당으로	관련 업무 팀장으로	보건위생과
69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소관업무 주무담당이	소관 업무 주무팀장이	보건위생과
70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항	업무담당	업무팀장	농업정책과
71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	농정기획담당	농정기획팀장	농업정책과
		제16조 제6항	업무담당으로	업무팀장으로	농업정책과
72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	업무담당	업무팀장	농업정책과
73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업무담당으로	업무팀장으로	농업정책과
74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2항	업무담당	업무팀장	농업정책과
75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제4조 제7항	담당	팀장	친환경농축산과
76	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담당이 된다	팀장이 된다	산림소득과
77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10조 제2항	귀농업무 담당	귀농업무 팀장	농촌지원과
78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직무육성품종 업무담당으로	직무육성품종 업무팀장으로	미래농업과
79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담당이	팀장이	상수도과
80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청소년업무담당	청소년업무 팀장	평생학습과
81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청소년업무 담당	청소년업무 팀장	평생학습과
82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2항	담당이	팀장이	문화예술과
		제20조 3항	담당이 되고	팀장이 되고	
83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문화업무담당이	소관업무 팀장이	문화예술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84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1항	소관업무 담당이	소관업무 팀장이	문화예술과
85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	담당주사가	팀장이	문화예술과
86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6항	업무담당이	업무팀장이	문화예술과
87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35조 2항	담당이	팀장이	문화예술과
88	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체육진흥업무담당주사가	체육진흥업무 팀장이	스포츠산업과
89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27조 제2항	위원회 업무 담당이	위원회 업무 팀장이	국가정원운영과
90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36조 제2항 (간사 및 서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간사는 순천시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순천시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순천만보전과
91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제32조 제2항	간사는 문학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학관 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순천시 공무원 중 문학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순천시 공무원 중 문학관 업무팀장이 된다.	순천만보전과
92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1조 제5항	업무담당주사로	업무팀장으로	공원녹지사업소
93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의6	도시림등 조성·관리 업무담당	도시림등 조성·관리 업무팀장	공원녹지사업소
94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26조 제7항	관리담당	관리팀장	낙안읍성
95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제8항	소관업무 담당	소관업무 팀장	문화예술회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1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8. 27.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2018년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써 사용수익·대부재산의 사용권자에 대하여 사용권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률효과로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고,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고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규정 해석의 어려움.
-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허가서(계약서)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담당자인 공무원에게 내부지침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조문의 의미는 있어 보이나 법적용어가 아닌 연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바람직하지는 않음.

2. 주요내용

○ 제19조 제1항 삭제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조항을 삭제

○ 제24조 삭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 하여야 한다.” 조항을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7. 7. 31. ~ 8.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01.(여성가족과-2796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7. 30.(전략기획과-811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7. 30.(순천시 공고 제2018-1243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 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 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 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 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 여야 한다.		<삭 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1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8. 8. 27.

1. 개정이유

- 정원지원센터의 명칭을 순천정원지원센터로 하고 주소 불일치 보완 정비 및 시설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원지원센터의 명칭을 순천정원지원센터로 하고 등록된 주소 불일치 보완 정비
- 시설 사용시간표 및 사용료 일부 개정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7. 24. ~ 2018. 8. 13.)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8. 1(여성가족과-2796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7. 23.(전략기획과-783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7. 24.(순천시 공고 제 2018-1219호)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정원지원센터 명칭은 순천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 162-13에 둔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시간표 (제7조 관련)

사용 구분		하 계 사용시간(3월~10월)	동 계 사용시간(11월~익년2월)	비고
세미나실,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주간	09:00~19:00	09:00~18:00	
	야간	19:00~21:00	18:00~20:00	
전시실	1일	09:00~18:00	09:00~18:00	

[별표 2]

정원지원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 (제8조 관련)

구분		평일	토·공휴일	비고
회의시설	세미나실	40,000원	60,000원	2시간 기준
	강의실	30,000원	50,000원	"
	멀티미디어실	30,000원	50,000원	"
전시실		40,000원		1일 기준
냉·난방료		10,000원		2시간 기준

1. 회의시설의 경우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을 부과한다.
2. 이용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계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치) <u>순천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 162-11에 둔다.</u></p> <p>제7조(사용시간) ① (생략) ② <u>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u></p>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 사용시간표 (제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20px;"> <thead> <tr> <th>사용구분</th> <th>1회 기준</th> <th>사용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세미나실 (회의시설)</td> <td>오전</td> <td>09:00 ~ 12:00</td> </tr> <tr> <td>오후</td> <td>13:00 ~ 18:00</td> </tr> <tr> <td>전시실</td> <td>1일</td> <td>09:00 ~ 18:00</td> </tr> </tbody> </table> <p>[별표2]</p> <p style="text-align: center;">정원지원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 (제8조제1항 관련)</p> <p>○ 시설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시설명</th> <th>규모 (㎡)</th> <th>기준</th> <th>사용료</th> <th>냉난방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획전시실</td> <td>130</td> <td>1일</td> <td>40,000</td> <td>20,000</td> <td>○ 1일 09:00~18:00</td> </tr> <tr> <td>상설전시실</td> <td>83</td> <td>1일</td> <td>30,000</td> <td>20,000</td> <td>○ 1회 오전, 오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td> </tr> <tr> <td>회의실 (세미나실)</td> <td>87</td> <td>1회</td> <td>20,000</td> <td>5,000</td> <td></td> </tr> <tr> <td>강의실 1</td> <td>38</td> <td>1회</td> <td>15,000</td> <td>4,000</td> <td>○ 냉난방기 -동·하절기 의무사용</td> </tr> <tr> <td>강의실 2</td> <td>39</td> <td>1회</td> <td>15,000</td> <td>4,000</td> <td>-기타기간 사용사만 적용</td> </tr> </tbody> </table> <p>※ 행사준비를 위해 전시실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감산</p>	사용구분	1회 기준	사용시간	세미나실 (회의시설)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8:00	전시실	1일	09:00 ~ 18:00	시설명	규모 (㎡)	기준	사용료	냉난방료	비고	기획전시실	130	1일	40,000	20,000	○ 1일 09:00~18:00	상설전시실	83	1일	30,000	20,000	○ 1회 오전, 오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회의실 (세미나실)	87	1회	20,000	5,000		강의실 1	38	1회	15,000	4,000	○ 냉난방기 -동·하절기 의무사용	강의실 2	39	1회	15,000	4,000	-기타기간 사용사만 적용	<p>제3조(명칭 및 위치) 정원지원센터 명칭은 <u>순천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 162-13 -----.</u></p> <p>제7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p>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 사용시간표 (제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20px;"> <thead> <tr> <th rowspan="2">사용구분</th> <th colspan="2">하 계 사용시간 (3월~10월)</th> <th colspan="2">동 계 사용시간 (11월~익년2월)</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주간</th> <th>야간</th> <th>주간</th> <th>야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세미나실, 강의실, 멀티미디어실</td> <td>09:00~19:00</td> <td>19:00~21:00</td> <td>09:00~18:00</td> <td>18:00~20:00</td> <td></td> </tr> <tr> <td colspan="4">전시실</td> <td>1일</td> <td>09:00~18:00</td> </tr> </tbody> </table> <p>[별표2]</p> <p style="text-align: center;">정원지원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 (제8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20px;">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평일</th> <th>토·공휴일</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회의 시설</td> <td>세미나실</td> <td>40,000원</td> <td>60,000원</td> <td>2시간 기준</td> </tr> <tr> <td>강의실</td> <td>30,000원</td> <td>50,000원</td> <td>"</td> </tr> <tr> <td>멀티미디어실</td> <td>30,000원</td> <td>50,000원</td> <td>"</td> </tr> <tr> <td colspan="2">전시실</td> <td colspan="2">40,000원</td> <td>1일 기준</td> </tr> <tr> <td colspan="2">냉·난방료</td> <td colspan="2">10,000원</td> <td>2시간 기준</td> </tr> </tbody> </table> <p>1. 회의시설의 경우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을 부과한다. 2. 이용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계산한다.</p>	사용구분	하 계 사용시간 (3월~10월)		동 계 사용시간 (11월~익년2월)		비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세미나실,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09:00~19:00	19:00~21:00	09:00~18:00	18:00~20:00		전시실				1일	09:00~18:00	구분		평일	토·공휴일	비고	회의 시설	세미나실	40,000원	60,000원	2시간 기준	강의실	30,000원	50,000원	"	멀티미디어실	30,000원	50,000원	"	전시실		40,000원		1일 기준	냉·난방료		10,000원		2시간 기준
사용구분	1회 기준	사용시간																																																																																																
세미나실 (회의시설)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8:00																																																																																																
전시실	1일	09:00 ~ 18:00																																																																																																
시설명	규모 (㎡)	기준	사용료	냉난방료	비고																																																																																													
기획전시실	130	1일	40,000	20,000	○ 1일 09:00~18:00																																																																																													
상설전시실	83	1일	30,000	20,000	○ 1회 오전, 오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회의실 (세미나실)	87	1회	20,000	5,000																																																																																														
강의실 1	38	1회	15,000	4,000	○ 냉난방기 -동·하절기 의무사용																																																																																													
강의실 2	39	1회	15,000	4,000	-기타기간 사용사만 적용																																																																																													
사용구분	하 계 사용시간 (3월~10월)		동 계 사용시간 (11월~익년2월)		비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세미나실, 강의실, 멀티미디어실	09:00~19:00	19:00~21:00	09:00~18:00	18:00~20:00																																																																																														
	전시실				1일	09:00~18:00																																																																																												
구분		평일	토·공휴일	비고																																																																																														
회의 시설	세미나실	40,000원	60,000원	2시간 기준																																																																																														
	강의실	30,000원	50,000원	"																																																																																														
	멀티미디어실	30,000원	50,000원	"																																																																																														
전시실		40,000원		1일 기준																																																																																														
냉·난방료		10,000원		2시간 기준																																																																																														